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82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신동욱・박준태・김 건

조배숙 · 김소희 · 서천호

엄태영 • 나경원 • 유용원

배준영 • 인요한 • 구자근

이만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일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10여년간 이중투표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건이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사전투표소에서 수집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는 이중투표 여부 등 향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하여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함(안 제158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2항 후단 중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를 "저장하여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6조 본문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제15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에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파일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투표에서 신분증명서 일부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8조(사전투표) ① (생 략)	제158조(사전투표) ① (현행과 같
	음)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2
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	
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	
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	
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	
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u>저장하여</u> 선거일의 투	저장하여 선거일 후 6개월
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u>다</u>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第186條(投票紙・開票錄 및 選擧	第186條(투표지・개표록 및 선거
錄 등의 보관) 區・市・郡選舉	록 등의 보관)
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	
・投票錄・開票錄・選舉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	
道選舉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 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 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 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 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 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 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제158조제2항에 따른 사
전투표에서 신분증명서의 일부
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
한 파일을 포함한다)